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- 94호

「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등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등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(안 제5조 제6호)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10. 12. ~ 2017. 10. 16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**제6호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설치기준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<신 설>	**제5조(설치기준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